|  |  |  |
| --- | --- | --- |
| **국가세무총국의 조세협정 집행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18년 제11호  중국 정부가 대외적으로 체결한 이중과세방지협정(이하 ‘조세협정’)의 집행을 통일하고 규범화 하기 위해, 이에 조세협정 중 상설기구, 해운, 항공운수, 연예인과 운동선수 조항 및 합명회사에 적용하는 조세협정 등 유관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법인자격을 지니지 않은 중외합작 교육기구 및 중외합작 교육항목 중에 교육과 교학활동을 전개하는 장소가 조세협정을 체결한 상대방 거주자의 중국에서의 상설기구가 된다.  상설기구 조항 중 노무활동의 상설기구 구성을 ‘어떠한 12개월 중 연속 또는 누적하여 6개월 초과’로 기술한 경우, ‘어떠한 12개월 중 연속 또는 누적하여 183일을 초과’라는 기술에 따라 집행한다.  2. 해운과 항공운수 조항이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와 과세회피 방지에 관한 협정> 및 의정서(이하 ‘중신조세협정’) 제8조(해운과 항공운수) 규정 내용과 일치할 경우, 아래의 원칙에 따라 집행한다.  2.1 체결국 일방 기업이 선박 또는 비행기로 국제운송업무에 종사하여, 체결국 다른 일방으로부터 취득한 수입은 체결국 다른 일방에서 세금을 면제한다.  국제운송업무에 종사하여 취득한 수입은 기업이 선박 또는 비행기로 여객 운수 또는 화물 운수업무를 경영하여 취득한 수입 및 항해용선, 기간임대 방식으로 선박을 임대하거나 포괄임대 방식으로 비행기(모든 설비, 인원 및 공급)를 임대하여 취득한 임대수입을 가리킨다.  2.2 상술한 제(1)항의 면세규정은 공동경영, 연합경영에 참가하거나 또는 국제경영기구에 참가하여 취득한 수입에 적용된다. 여러 회사가 국제운송업무를 연합하여 경영하는 세무처리에 대하여, 각 지분참여 또는 합작기업이 분배 받은 이윤에 따라 각각 소속 거주자 국가에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3 중신조세협정 제8조 제3항 중 ‘체결국 일방 기업이 선박 또는 비행기로 경영하는 국제운송업에 부속된 유관 예금 중에서 취득한 이자소득’은, 체결국 쌍방의 국제운송업무의 해운과 항공운수에 종사하는 기업이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운송수입을 상대방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를 가리킨다. 해당 이자는 중신조세협정 제11조(이자)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국제운송업무의 부대 발생 수입으로 간주하여야 하며, 출처국에서 세금 면제를 받는다.  2.4 기업이 선박임대차 방식으로 선박을 임대하거나 드라이리스 방식으로 비행기를 임대, 화물 또는 상품 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트레일러와 운송 컨테이너 유관 설비 포함)를 사용, 보관 또는 임대 등 임대업무로 취득한 수입은 국제운송수입에 속하지 않지만 중신조세협정 제8조 제4항에 근거하여 국제운송업무에 부속된 상술 임대업무 수입은 국제운송업무 수입으로 간주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부속’은 국제운송업무와 관련되고 국제운송업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가리키며, 지원 또는 부대 성질을 띤다. 기업이 해당 국제운송업무에 부속되는 상술한 임대사업에 종사하여 취득한 수입에 관하여 해운과 항공운수 조항의 협정특혜를 받으려면,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조전을 충족시켜야 한다.  2.4.1 기업의 공상등기 및 관련 증빙자료로 기업의 주 영업활동이 국제운송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2.4.2 기업이 종사하는 부대사업이 국제운송업무를 경영 시, 주 영업활동에 대한 기여가 비교적 적으나 주 영업활동과 연결이 매우 밀접하고 한 개의 단독 업무 또는 소득 출처로 간주할 수 없는 활동일 경우  2.4.3 한 회계연도 내, 기업이 부대사업에 종사하여 취득한 수입이 해당 국제운송업무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원칙상 1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2.5 아래의 국제운송업무와 밀접히 연관된 수입은 국제운송 수입의 일부분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2.5.1 기타 국제운송기업을 위해 승차권을 대리 판매하여 취득한 수입  2.5.2 시내에서 공항까지 여객을 운송하여 취득한 수입  2.5.3 화물차를 통해 화물창고로부터 공항, 부두 또는 후자로부터 구매자 간의 운송에 종사하거나 직접 화물을 구매자에게 발송하여 취득한 운송수입  2.5.4 기업이 단지 운송여객에게 환승 숙박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여관에서 취득한 수입  2.6 국제운송업무에 비전문적으로 종사하는 기업이 자신이 보유한 선박 또는 비행기로 국제운송업무를 경영하여 취득한 수입은 국제운송수입에 속한다.  3. 해운과 항공운수 조항 중 중신조세협정 제8조 제4항 규정이 없을 경우, 유관 조세협정 체결 상대방 거주자가 본 공고 제2조 제(4)항에서 서술한 임대업무에 종사하여 취득한 수입은 본 공고 제2조 제(4)항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4. 연예인과 운동선수 조항이 중신조세협정 제17조(예술가와 운동선수) 규정 내용과 일치할 경우, 아래의 원칙에 따라 집행한다.  4.1 연예인 활동에는 연예인이 종사하는 무대, 영화와 드라마, 뮤직 등 각종 예술형식의 활동을 포함한다. 연예인 신분으로 전개하는 기타 개인활동(예를 들어 연예인이 전개하는 영화 홍보활동, 연예인 또는 운동선수가 광고 촬영, 기업 송년회, 기업 커팅식 등 활동에 참가), 오락성질을 띤 정치, 사회, 종교 또는 자선사업과 연관된 활동을 포함한다.  연예인 활동에는 회의 발언, 수행행정, 스탭(예를 들어 촬영 기사, 프로듀서, 감독, 안무가, 기술인원 및 유동 공연팀의 운송인원 등) 신분으로 전개하는 활동은 포함하지 않는다.  상업활동 중에 공연 성질을 띤 연설을 진행하는 것은 회의 발언에 속하지 않는다.  4.2 운동선수 활동에는 경주, 점프, 수영 등 전통적인 스포츠 경기종목에 참가하는 활동, 골프, 경마, 축구, 크리켓, 테니스, 레이싱 등 운동항목에 참가하는 활동, 당구, 장기, 브리지 게임, e-스포츠 경기 등 오락성질을 띤 경기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포함한다.  4.3 연예인 또는 운동선수 신분으로 개인활동을 전개하여 취득한 소득에는 공연활동을 전개하여 취득한 소득(예를 들어 출연료) 및 공연활동의 전개와 직접 또는 간접적 관계가 있는 소득(예를 들어 광고비)을 포함한다.  공연활동의 음반 제품 판매로 발생한 소득 중 연예인 또는 운송선수에게 분배한 소득 및 연예인 또는 운동선수와 연관된 저작권 관련 소득에 대하여, 중신조세협정 제12조 (특허권사용료)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4.4 연예인 또는 운동선수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득을 취득한 상황 하에, 중신조세협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연활동이 발생한 체결국 일방은 그 국내법에 근거하여 연예인 또는 운동선수가 취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중신조세협정 제14조(독립개인노무)와 제15조(비독립개인노무)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4.5 공연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개인, 회사 및 기타 단체를 포함)이 수취하는 상황 하에, 만약 공연활동이 발생한 체결국 일방의 국내법 규정에 의거하여, 타인이 수취한 소득이 연예인 또는 운동선수가 취득한 소득으로 간주되면 중신조세협정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공연활동이 발생한 체결국 일방은 그 국내법에 따라 연예인 또는 운동선수에게 공연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징수할 수 있고, 중신조세협정 제14조(독립개인노무)와 제15조(비독립개인노무)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만약 공연활동이 발생한 체결국 일방이 그 국내법에 의거하여 타인이 수취한 소득을 연예인 또는 운동선수가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지 못할 경우, 중신조세협정 제17조 제2항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국가는 국내법에 따라 소득을 수취한 타인에게 공연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 관하여 세금을 징수할 수 있고, 중신조세협정 제7조(영업이익), 제14조(독립개인노무)와 제15조(비독립개인노무)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유관 합명회사 및 기타 유사 실체(이하 ‘합명회사’)의 조세협정 적용 문제는 아래의 원칙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5.1 중국법률에 의거하여 중국 경내에 설립한 합명회사의 동업자가 조세협정 체결 상대방 거주자일 경우, 해당 동업자가 중국에서 납세의무를 지닌 소득부분에 대해 체결 상대방이 거주자의 소득으로 간주할 경우, 중국에서 협정특혜를 받을 수 있다.  5.2 외국(지역)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한 합명회사는 그 실제 관리기구가 중국 경내에 있지 않지만 중국 경내에 기구, 장소를 설립한 경우 또는 중국 경내에 기구, 장소를 설립하지 않았지만 중국 경내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을 경우, 중국 기업소득세의 비거주자기업 납세자로 한다. 조세협정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단지 해당 합명회사가 체결 상대방 거주자인 상황에 한해 중국에서 납세의무를 지닌 소득은 협정특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합명회사는 <비거주납세자 조세협정 특혜향유 관리방법>(국가세무총국공고 2015년 제60호 발표) 제7조에서 제출한 체결 상대방 주관 세무당국에서 발급한 세수거주자신분 증명에 근거하여, 체결 상대방 국내법의 주소, 거주지, 설립장소, 관리기구 소재지 또는 기타 유사 기준에 근거하여 체결 상대방에서 납세의무를 지닌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조세협정에서 별도로 규정한 상황은, 조세협정에서 규정한 체결 상대방 국내법에 근거하여, 합명회사가 취득한 소득을 동업자가 취득한 소득으로 간주할 경우, 체결 상대방 거주 동업인은 해당 합명회사가 취득한 소득 중에서 분배 받은 상응하는 배당에 대하여 협정특혜를 받아야 함을 가리킨다.  6. 내륙이 홍콩, 마카오특별행정구와 체결한 이중과세 방지 집행의 유관 문제는 본 공고를 적용한다.  7. 본 공고는 2018년 4월 1일자로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와 과세회피 방지에 관한 협정> 및 의정서 조문 해석>(국세발 [2010] 75호) 제8조와 제17조는 동시에 폐지한다.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8년 2월 9일 |  | **国家税务总局关于税收协定执行若干问题的公告**  国家税务总局公告2018年第11号  　　为统一和规范我国政府对外签署的避免双重征税协定（简称“税收协定”）的执行，现对税收协定中常设机构、海运和空运、演艺人员和运动员条款，以及合伙企业适用税收协定等有关事项公告如下：  　　一、不具有法人资格的中外合作办学机构，以及中外合作办学项目中开展教育教学活动的场所构成税收协定缔约对方居民在中国的常设机构。  　　常设机构条款中关于劳务活动构成常设机构的表述为“在任何十二个月中连续或累计超过六个月”的，按照“在任何十二个月中连续或累计超过183天”的表述执行。  　　二、海运和空运条款与《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新加坡共和国政府关于对所得避免双重征税和防止偷漏税的协定》及议定书（以下简称“中新税收协定”）第八条（海运和空运）规定内容一致的，按照以下原则执行：  　　（一）缔约国一方企业以船舶或飞机从事国际运输业务从缔约国另一方取得的收入，在缔约国另一方免予征税。  　　从事国际运输业务取得的收入，是指企业以船舶或飞机经营客运或货运取得的收入，以及以程租、期租形式出租船舶或以湿租形式出租飞机（包括所有设备、人员及供应)取得的租赁收入。  　　（二）上述第（一）项的免税规定也适用于参加合伙经营、联合经营或参加国际经营机构取得的收入。对于多家公司联合经营国际运输业务的税务处理，应由各参股或合作企业就其分得利润分别在其所属居民国纳税。  　　（三）中新税收协定第八条第三款中“缔约国一方企业从附属于以船舶或飞机经营国际运输业务有关的存款中取得的利息收入”，是指缔约国双方从事国际运输业务的海运或空运企业，从对方取得的运输收入存于对方产生的利息。该利息不适用中新税收协定第十一条（利息）的规定，应视为国际运输业务附带发生的收入，在来源国免予征税。  　　（四）企业从事以光租形式出租船舶或以干租形式出租飞机，以及使用、保存或出租用于运输货物或商品的集装箱（包括拖车和运输集装箱的有关设备）等租赁业务取得的收入不属于国际运输收入，但根据中新税收协定第八条第四款，附属于国际运输业务的上述租赁业务收入应视同国际运输收入处理。  　　“附属”是指与国际运输业务有关且服务于国际运输业务，属于支持和附带性质。企业就其从事附属于国际运输业务的上述租赁业务取得的收入享受海运和空运条款协定待遇，应满足以下三个条件：  　　1.企业工商登记及相关凭证资料能够证明企业主营业务为国际运输；  　　2.企业从事的附属业务是其在经营国际运输业务时，从事的对主营业务贡献较小但与主营业务联系非常紧密、不能作为一项单独业务或所得来源的活动；  　　3.在一个会计年度内，企业从事附属业务取得的收入占其国际运输业务总收入的比例原则上不超过10%。  　　（五）下列与国际运输业务紧密相关的收入应作为国际运输收入的一部分：  　　1.为其他国际运输企业代售客票取得的收入；  　　2.从市区至机场运送旅客取得的收入；  　　3.通过货车从事货仓至机场、码头或者后者至购货者间的运输，以及直接将货物发送至购货者取得的运输收入；  　　4.企业仅为其承运旅客提供中转住宿而设置的旅馆取得的收入。  　　（六）非专门从事国际运输业务的企业，以其拥有的船舶或飞机经营国际运输业务取得的收入属于国际运输收入。  　　三、海运和空运条款中没有中新税收协定第八条第四款规定的，有关税收协定缔约对方居民从事本公告第二条第（四）项所述租赁业务取得的收入的处理，参照本公告第二条第（四）项执行。  　　四、演艺人员和运动员条款与中新税收协定第十七条（艺术家和运动员）规定内容一致的，按照以下原则执行：  　　（一）演艺人员活动包括演艺人员从事的舞台、影视、音乐等各种艺术形式的活动；以演艺人员身份开展的其他个人活动（例如演艺人员开展的电影宣传活动，演艺人员或运动员参加广告拍摄、企业年会、企业剪彩等活动）；具有娱乐性质的涉及政治、社会、宗教或慈善事业的活动。  　　演艺人员活动不包括会议发言，以及以随行行政、后勤人员（例如摄影师、制片人、导演、舞蹈设计人员、技术人员以及流动演出团组的运送人员等）身份开展的活动。  　　在商业活动中进行具有演出性质的演讲不属于会议发言。  　　（二）运动员活动包括参加赛跑、跳高、游泳等传统体育项目的活动；参加高尔夫球、赛马、足球、板球、网球、赛车等运动项目的活动；参加台球、象棋、桥牌比赛、电子竞技等具有娱乐性质的赛事的活动。  　　（三）以演艺人员或运动员身份开展个人活动取得的所得包括开展演出活动取得的所得（例如出场费），以及与开展演出活动有直接或间接联系的所得（例如广告费）。  　　对于从演出活动音像制品出售产生的所得中分配给演艺人员或运动员的所得，以及与演艺人员或运动员有关的涉及版权的所得，按照中新税收协定第十二条（特许权使用费）的规定处理。  　　（四）在演艺人员或运动员直接或间接取得所得的情况下，依据中新税收协定第十七条第一款规定，演出活动发生的缔约国一方可以根据其国内法，对演艺人员或运动员取得的所得征税，不受到中新税收协定第十四条（独立个人劳务）和第十五条（非独立个人劳务）规定的限制。  　　（五）在演出活动产生的所得全部或部分由其他人（包括个人、公司和其他团体）收取的情况下，如果依据演出活动发生的缔约国一方国内法规定，由其他人收取的所得应被视为由演艺人员或运动员取得，则依据中新税收协定第十七条第一款规定，演出活动发生的缔约国一方可以根据其国内法，向演艺人员或运动员就演出活动产生的所得征税，不受到中新税收协定第十四条（独立个人劳务）和第十五条（非独立个人劳务）规定的限制；如果演出活动发生的缔约国一方不能依据其国内法将由其他人收取的所得视为由演艺人员或运动员取得，则依据中新税收协定第十七条第二款规定，该国可以根据其国内法，向收取所得的其他人就演出活动产生的所得征税，不受到中新税收协定第七条（营业利润）、第十四条（独立个人劳务）和第十五条（非独立个人劳务）规定的限制。  　　五、有关合伙企业及其他类似实体（以下简称“合伙企业”）适用税收协定的问题，应按以下原则执行：  　　（一）依照中国法律在中国境内成立的合伙企业，其合伙人为税收协定缔约对方居民的，该合伙人在中国负有纳税义务的所得被缔约对方视为其居民的所得的部分，可以在中国享受协定待遇。  　　（二）依照外国（地区）法律成立的合伙企业，其实际管理机构不在中国境内，但在中国境内设立机构、场所的，或者在中国境内未设立机构、场所，但有来源于中国境内所得的，是中国企业所得税的非居民企业纳税人。除税收协定另有规定的以外，只有当该合伙企业是缔约对方居民的情况下，其在中国负有纳税义务的所得才能享受协定待遇。该合伙企业根据《非居民纳税人享受税收协定待遇管理办法》（国家税务总局公告2015年第60号发布）第七条报送的由缔约对方税务主管当局开具的税收居民身份证明，应能证明其根据缔约对方国内法，因住所、居所、成立地、管理机构所在地或其他类似标准，在缔约对方负有纳税义务。  　　税收协定另有规定的情况是指，税收协定规定，当根据缔约对方国内法，合伙企业取得的所得被视为合伙人取得的所得，则缔约对方居民合伙人应就其从合伙企业取得所得中分得的相应份额享受协定待遇。  　　六、内地与香港、澳门特别行政区签署的避免双重征税安排执行的有关问题适用本公告。  　　七、本公告自2018年4月1日起施行。《〈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新加坡共和国政府关于对所得避免双重征税和防止偷漏税的协定〉及议定书条文解释》（国税发〔2010〕75号）第八条和第十七条同时废止。  　　特此公告。  国家税务总局  2018年2月9日 |